

자료



<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례 >

<p>[사례1] 기술의 제3자 유출</p>	<p>대기업이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‘공정 프로세스 및 설명서, 제품 설계도’ 등 관련 기술자료 일체를 요구하고, 관련 자료를 타사에 제공하여 동일한 부품을 제조토록 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하고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</p>
<p>[사례2] 경영정보 요구</p>	<p>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의 세부원가내역서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최소한의 영업이익(1~2% 내외)만 보장하는 수준에서 계속 단가 책정</p>
<p>[사례3] 거래전 기술유용</p>	<p>대기업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조방법·도면 등 기술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서 기술자료만 획득한 후, 하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동 기술자료를 유용해 유사제품을 제조</p>
<p>[사례4] 공동특허 출원요구</p>	<p>대기업의 자금출연 등 도움 없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공동 특허출원을 요구하여 특허권을 대기업과 공유</p>

< 대책이후 제재가 가능해진 기술유용 행위 >

사례	기존→ 변화	관련 과제
협약평가 우수기업인 대기업 A사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	협약평가 우수기업 인센티브로 직권 조사 불가→ <u>민원내용 등을 바탕으로 직권조사 실시</u>	협약평가 기준 개정
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였으나 구체적인 유용 행위에 대한 증빙이 부족	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해 사건처리 불가→ <u>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만을 근거로 제재</u>	기술유출 금지
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세부원가 내역서 및 원가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부증빙도 요구	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대한 제재 불가→ 경영정보 요구 금지 <u>위반으로 제재</u>	경영정보 요구 금지
대기업에게 물건을 납품한 후 3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도중 대기업의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입어 납품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공정위에 신고	시효도과로 사건처리 불가→ <u>납품 후 7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처리 가능</u>	조사시효 연장
대기업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조방법·도면 등 <u>기술자료를</u> 요구해 유사제품을 제조하고 하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음	적극적인 제재 한계→ <u>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한 행위 (사업활동방해)로 보아 적극 대응</u>	공정거래법 상 <u>사업활동 방해</u> 조항 개선

첨부: 공정위 설명 자료

기술탈취, 부정경쟁, 영업비밀, 손해배상, 형사고소, 민사소송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